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7. 03. 23.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검토 연구

이 상 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sky99@cni.re.kr

유 예 나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원 yooyena@cni.re.kr

이 연구는 2015년 제정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법제도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 및 대안 제시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 1.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요
- 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사례
- 3.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
- 4. 정책제언

요약

- 이 연구는 당진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먼저, 당진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법·제도적 요구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다음 단계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지역 간 불균형 측정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결과, 당진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사업 전 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마련이 필요하며, 2) 지역 간 역차별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후에 사업 과정에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더불어,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함
-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당진시 균형발전사업의 추진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선행하는 것을 제안함
 - 당진시 중장기 발전계획 상 사업계획 추진
 -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계 시범사업 및 국비 지원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요

1. 지역균형발전 정책

-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됨
 -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초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
 -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살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비전을 설정하였음¹⁾
 -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이 혁신역량과 삶의 질을 구비한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음²⁾
- 이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 와서도, 국기균형발전정책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변화하였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음
 -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권마다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 설치, 전담조직 및 기구 설치, 추진계획 수립, 특별회계 등 예산 반영 등이 공통적으로 추진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법·제도 및 회계 상의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더불어,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¹⁾ 한상욱. 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p.19.

²⁾ 노무현사료관. 2017,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성과, http://archives.knowhow.or.kr

명확한 조직 및 기구를 통한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표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 계획 변화 내용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명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목적	· 지역균형발전	· 지역 경쟁력 강과	· 지역 경쟁력 강과 ·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조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추진체계	· 국가균형발전계획 · 부문별 발전계획 · 지역혁신발전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부문별 발전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부문별 발전계획 · 시·도발전계획 ·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역점정책	· 지역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지역전략산업 육성 · 지역선도산업 선정 및 육성	· 지역특화산업으로 대체 · 지역협력산업으로 대체
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도특별자치도계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도특별자치도계정	·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도특별자치도계정

출처: 대구경북연구원, 2013, 국기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변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

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추진해오고 있음
 - 2007년 전국 최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2017. 3. 30)"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이후 8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³⁾
 -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에서 선정된 시·군으로 정의함

³⁾ 법제처. 201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http://www.law.go.kr

-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정의함
- 먼저,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6개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인구(연평균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산업(총사업체 종사자비율), 재정(재정력지수), 소득(소 득세할 주민세 총액), 사회기반(도로율)을 제시하고 있음

[표 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7 LI	LIIO		
구분	내용		
인구	·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는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산출한다.		
	· 인구의 고령화가 심한 정도는 전년도 말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산업	·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정도는 최근 총사업체 종사자비율(사업체의 총 종사자수를 인구수로 나		
	눈 비율)로 산출한다.		
재정	·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한 정도는 최근 5년간 시·군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의 합을 기준재정수		
	요의 합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소득	· 지역소득 수준이 낮은 정도는 최근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사회기반	·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한 정도는 최근 도로율(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개통도로의 연장을 행정구역 면		
	적으로 나눈 값)로 산출한다.		

출처: 법제처. 201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http://www.law.go.kr

-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기본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여하는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유영하도록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특별회계의 세입은,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을 통해 마련토록 하고 있음

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사례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음
 - 일반 지자체로는 충청남도 당진시, 천안시,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음

1. 광역지자체 추진 사례

- 광역지자체는 활용가능한 재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일반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권과 남부권, 북부권 등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저발전지역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7,223억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상지역의 낙후수준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경상남도의 경우, 각 시·군의 특장점을 반영한 개성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를 크게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낙후도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2. 충청남도 지자체 추진 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당진시를 제외하고 천안시가 유일하게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임⁴⁾
 - 천안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인구증감율, 소득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 상으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천안시장이 평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조례가 2007년 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미흡한 상황임
 -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는 다른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오히려, 관련 조례가 제정될 당시 천안시는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으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천안시 주도의 장기 발전전략 속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3. 종합

-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의 균등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 다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첫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지역"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통한 충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와 같이, 해당 지자체의 특장점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⁴⁾ 법제처. 2017,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

3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의 이행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크게 3단계로 추진이 가능함
 - 첫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 단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와 기반을 재정립하는 단계임
 - 둘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단계로, 재정비된 법·제도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사 업을 추진하는 단계임
 - 셋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후 단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 를 평가하고 이를 지역 내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 단계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함에 있어, 당진시에서는 현재의 조례에 대한 검토 및 개선, 지표 발굴.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1)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검토 및 개선

- 현재 조례는 크게 총칙,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당진시 균형발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총칙에서는,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제3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원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면·동",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지역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면·동"이라는 기준은 지자체 내 읍·면·동에서 는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현재의 시대적 가치가 점점 개발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는 균형발전 수립 기간에 대한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지역을 대상으로 "5년"단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를 고려하여 제시된 기준으로, 실제 당진시와 같이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과도한 기간 설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더불어, 지원대상지역이 5년 간 변동이 없다는 것은, 급변하는 지역개발 여건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도 과도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마련

- 현재 조례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현재 조례에서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하고 있음⁵⁾
 - 더불어, 특별회계는 1)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타수입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당진시 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⁵⁾ 법제처. 2017,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http://www.law.go.kr

-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간 협의를 통해, 실제 당진시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특별 회계의 규모와 운용 기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당진시 균형발전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의 신설도 필요함

3)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표 개발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지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현재 조례에서는 인구, 취업기반, 지역재정, 사회기반시설 등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제 자료 구축 및 활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필요할 경우,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지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 지표 개발은 1) 기존 지표 검토 ⇒ 2) 문헌 및 평가 지표 사례 검토 ⇒ 3) 전문가 자문회의
 ⇒ 4) 분석대상 지표 결정 ⇒ 5) 최종 지표 도출 등 단계적 절차를 통해 발굴함

[표 3] 지표 발굴 단계(예시)

구분		내용
1단계	기존 지표 검토	· 충청남도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2단계	문헌 및 평가 지표 사례 검토	· 중앙(개발/성장 촉진지역, 신활력 등)
		· 타 지자체 균형발전사업 등
3단계	활용된 지표 분석 및 종합	· 지표 구분, 지표 활용 횟수 등 분석
4단계	전문가 및 관련자 자문회의	· 지표 선정 및 산출방법
5단계	분석대상 지표 선정	· 지표의 적절성, 지역 간 형평성, 자료 구득 가능성
6단계	최종 지표설정	

출처 : 충남연구원. 2017.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지역간 불균형 측정지표 개발 관련 당진시의회 보고자료

4) 지원대상지역 선정 관련 지역 합의 도출

- 지원대상지역은 당진시의 일부 읍·면·동에 불과함
 - 조례에서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대해,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읍·면·동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결국, 당진시 내 모든 읍·면·동이 지원대상지역이 되는 것이 아닌, 일부 읍·면·동만 지원 대상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함

-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읍·면·동의 역차별 발생 우려 상존
 -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당진시 내 14개 읍·면·동에 대한 순위 선정이 필요함
 -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지역(특히 동지역, 북부 산업단지 입지 읍·면)의 역차별 발생 우려

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단계

- 1)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방향 설정
 - 첫째. 조례 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의 내부적 발전역량 제고
 - 당진시 내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님
 -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 둘째, 지역 간 자율적 경쟁과 특성화 기회 보장
 - 지역 간 자율적 경쟁과 특성화 및 혁신 노력에 대한 기회의 균등성 보장
 - 공동체 중심의 H/W+S/W+HnW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적 자립 역량 구축
 -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 선도
 - 당진시 읍·면·동 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사업으로의 성격
 - 주민 역량강화, 마을 발전기반 구축 등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 소규모·핵심사업 위주로 추진
 - 넷째, 당진시 중장기 발전계획 등과의 차별성 확보
 - 당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도 연계된 사업으로서의 사업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중심
 - 다섯째,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의 균등 배분 지양
 - 지역 간 불균형 측정지표에 기초한 지원대상지역 선정(※읍·면·동 차등화)

- 지원대상지역 내에서도 지원되는 지역 선정(※지원대상 "리"단위 차등화)
-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차등화(※지원대상지역도 차등화)

2)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념 정립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사업의 개념에 대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균형발전의 용어자체가 갖는 지역 간 사회·경제적여건과 삶의 질 상의 일정수준의 균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⁶⁾
 - "당진시 균형발전사업은 당진시 읍·면·동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과 같은 당진시 특성을 고려한 개념 재정립 필요

3)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 선정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지역 선정이 필요함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표를 활용하여, 당진시 내 읍·면·동에 대한 분석을 최종적인 지원 대상지역을 도출함
- 명확한 분석기준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4) 지원대상지역 발전방향 제시

-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읍·면·동별 발전방향을 제시함
- 지원대상지역 발전방향은 제시된 개별 지표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읍·면·동별 미래상과 발전과제 등을 제시함
 - 더불어, 읍·면·동별 추진 가능한 사업 예시를 제시함

10 ▮ 현안과제연구

⁶⁾ 한상욱. 2016, 전게서, p.61.

5) 지원대상지역 발전계획 수립

- 지원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계획을 제시함
 - 현재 조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5년 단위 중기 발전계획 수준의 계획을 제시함
- 더불어,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실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시함
 - 지원대상지역별로 1~2개 정도의 선도사업 성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 사업계획은 사업명과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위치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제안 서 형태로 작성하도록 함
-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진시에서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예산이나 전문가 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후 단계

- 1)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 당진시 균형발전위원회를 활용한 지원대상지역 평가 실시
 - 먼저, 당진시 균형발전사업 평가기준을 마련함
 - 다음으로, 균형발전위원회 등을 활용한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안한 균형발전사업을 평가함

2)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지역의 최종적인 선정 및 예산 지원
 -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제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 사후 모니터링 실시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균형발전위원회 및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과 검증 절차 이행 필요

4 정책제언

1.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필요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특별회계 설치 및 규모 결정은,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선결조건임
 - 특별회계의 규모에 따라.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의 성격과 기능이 변화됨
- 특별회계를 마련하기 위한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지역주민 간의 합의 도출 과정 필요
 - 조례에 기초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이 당연함
 - 다만,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순기능 이외 역차별 등의 역기능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다양한 지역 내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 필요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당진시 재원 및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산정함
 - 특별회계 규모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약 100억 정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예,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사업 40억 기준)
 - 이를 통해 지원대상지역을 최소 2개소에서 최대 4개소까지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이 경우 1개 지원대상지역은 최소 25억에서 최대 50억까지의 균형발전사업 특별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안적 추진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별개로. 아래와 같은 대안적 사업도 검토 필요

1) 당진시 중장기 발전계획 상 사업계획 추진

- 현재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서는 당진시 내 14개 읍·면·동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따라서, 당진시 중장기 발전계획 상의 사업계획에 대한 선제적 추진 방안 모색 검토
- 첫째,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발굴
 -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조례에서 제시된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현재 14개 읍·면· 동에 대한 발전 순위를 부여하며, 읍·면·동 발전 순위가 낮은 지역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함
 -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은, 중장기 발전계획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립함
 - 읍·면·동 발전 순위에 기초하여,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역으로 제시하여 낙후도가 높은 읍·면·동에 대해 우선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함
- 둘째.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년차별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지역에 선정된 읍·면·동을 대상으로 년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함
 - 2017년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는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규모를 결정함
 - 차기년도부터, 실제 중장기발전계획 상 사업의 추진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
 - 지원대상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당진시와 당진시 의회,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된 읍·면·동, 지역주민 간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다른 지원대상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규모는 최대한 동 일한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2) 당진시 주민자치 연계 시범사업 추진

-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활동과 연계한 소규모 주민자치 공모사업 실시
 - 대상은 사회 통념 상 낙후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조례에서 제 시된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도출된 순위에 따라 대상지역을 선정함
 -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약 1~5억 규모의 시점사업을 추진함
 - 시민들(공동체 등)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진시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
- 소규모 주민자치 공모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이행을 도모함
 - 기본 : 사전 역량강화 단계
 - ※ 당진시 주민자치 활동 등을 통해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함
 - 1단계 : 신규사업 사업 발굴 단계(2개월~3개월)
 -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3개월~4개월)
 - 3단계 : 사업 선정 및 평가 단계(1개월)
 - 4단계 : 시행계획 수립 단계(3개월~4년)
 - 5단계 : 사업시행 단계(1~2년)
 - 6단계 : 사후 관리·운영 단계(1~2년)

3) 국비 지원사업 우선 배정 방식 추진

- 현재 추진되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 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 우선순위 부여
- 다양한 중앙부처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분석하여,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전문인력을 지원함
 - 현재까지 지원 현황을 읍·면·동별로 분석하여,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원 가능한 국비지원 공 모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함

14 ▮ 현안과제연구

- 이를 통해, 지원대상지역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참여 시, 제안서 및 기본계획 수립, 주민역 량강화 등에 요구되는 예산이나 전문인력 등을 지원함
- 당해연도에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다시 한번 지원하여 최종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다만, 지원대상지역이 1개소가 아닐 경우에는, 전년에도 선정되지 못한 지원대상지역과 당해 연도에 신청해야 할 지원대상지역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당진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당해연도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함
 - 이때, 당해연도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지원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지속적인 국비지원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장기적인 국비지원 공모사업 참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단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 하나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비지원 확률을 최대한 향상시킴

이상. 끝.

참고자료

보고자료

노무현사료관. 2017,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성과, http://archives.knowhow.or.kr

대구경북연구원. 201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변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 법제처. 2017,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http://www.law.go.kr 법제처. 2017,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 법제처. 201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http://www.law.go.kr 법제처. 201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http://www.law.go.kr 법제처. 201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http://www.law.go.kr 충남연구원. 2017,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지역간 불균형 측정지표 개발 관련 당진시의회

한상욱. 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